

#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송재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28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동 조례안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·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시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및 유입주의 생물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  
조례의 제명을 “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”로 개정하고, 안 제4장의 제목 “자연환경정보의 관리 및 활용”

을 “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”으로 변경하였습니다.

또한 조례안 세부 내용으로 안 제26조에서 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, 안 제27조에서 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, 안 제28조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및 유입주의 생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